

2025년 청년 일경험(인턴형) 지원 사업 안내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우수 운영기관 선정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I.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미래내일 청년일경험 사업 인턴형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

□ 목적

- 우리 센터에서는 미래내일 청년일경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전 직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사업내용

- 사회적 기업의 정확한 필요를 기반으로 직무 및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청년을 발굴하고 직무교육을 실시 후 기업에 청년 매칭

II. 사업 참여 조건

□ 기업 참여 조건

기업 참여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의 예외 존재(단,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만)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제한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공표안 일자로부터(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 1년간 참여 제한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2년~'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제한사항)** 사업장 10인 미만 혹은 10인이상 1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청년 참여자는 10%비율로 모집, 즉 1명의 참여자 모집만 가능-고용부 요청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15인 이상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 운영기관의 판단으로 청년의 양질의 일경험이 가능하면 참여 청년 추가 모집 가능)

□ 청년 참여 조건

참여청년 자격 조건

-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 참여 청년이 미성년자일 경우 참여 동의서 접수
- **(지원방식)**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청년,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

- **(제한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Ⅲ. 사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8주형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 (주 25시간, 총 200시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40만원 (8주 / 주당 5만원)
 - 멘토 : 참여청년 1인당 30만원 (8주 / 주당 3.75만원)
 - 참여청년 : 수당 최대 280만원 (8주 / 주당 35만원)
- * 일 경험 수당은 주당 25시간 기준한도
- * 수당 산정기준 : 주당 출석률을 반영하여 주급을 산정하고, 8주 단위로 지급

< 참고 : 지원금액(8주 기준) >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급기준 (A)	지원금액 (B)	기간 (C)	총액 (A×B×C)
사전 직무교육	청년	수당	1인	1일 1만원	3일(20시간)	3만원
일경험 인턴십	기업	지원금	1인	5만원	8주	40만원
	멘토	수당	1인	3.75만원	8주	30만원
	청년	수당	1인	35만원	8주	280만원
		체류지원비	1인	5만원	8주	40만원

※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일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원(증빙서류-등초본, 재학 증명서)

□ 지원금 지급(매월 단위 정산 지급)

- (청년지원금)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17)에 포함된 이수 여부, 참여시간 등 확인 후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35만원을 출석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차등 지급
- (기업지원금)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5만원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수당) 참여청년 멘토 1인당 주당 3.75만원(단, 멘토수당은 관리 청년 1명당 기준으로 산정)

※ 예) 참여청년 8명 관리 시 멘토수당은 기간(주)×참여청년 8명×3.75만원

<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80% 이상 출석	35만원	5만원
70% 이상~80% 미만 출석	31만원	
60% 이상~70% 미만 출석	24만원	4만원
50% 이상~60% 미만 출석	21만원	
40% 이상~50% 미만 출석	18만원	3만원
20% 이상~40% 미만 출석	14만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인정

III. 프로그램 운영

구분	추진절차	수행내용	실시시기
① 참여기업 등록	1. 참여기업 등록 2. 협약체결	· 참여의향서 참여자격확인서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운영기관(KCDC)-참여기업 협약체결 ※ 참여기업 자격조회 시행	상시 기업 선정시
③ 프로그램 운영	1. 담당자(멘토) 지정 2. 청년관리	· 기업-청년 매칭 (운영기관 수행) 에 따른 참여기업 담당자 지정 · 운영계획서에 따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관리	개시전~후
③ 사업종료	실적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산처리	종료 후 2주

□ 인턴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프로그램 설계) 해당 기업에서 ① 과업 및 직무실습, ② 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 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

- (프로그램 기준) 주당 25시간 이내, 총 8주 운영

※ 일경험 운영 시간은 9~18시에 한하며 주 25시간 운영

※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5시) 및 휴일에 일경험 실시 불가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

구분	인턴형 일경험(8주)
일경험 기간	8주(200시간)
프로그램 내용(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 · 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수련 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 **(프로그램 확장)**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사전직무교육 운영계획서등 작성 제출(프로그램 개시 최소 2주전 제출하여 승인 후 개시)
 - 프로그램 운영 시 정보 매칭 및 참여기업 요건 검증을 위해 워크넷 가입 (기업회원) 필수
 - 되도록 2개월 이내에 개시되는 프로그램 등록 수시 청년 신청 접수
- **(프로그램 관리)** 실시보고는 개시 후 참여청년 현황 등 2일 이내, 결과 보고는 프로그램 종료 후 3일 이내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
- **(참여청년 관리)** 일경험 프로그램 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멘토 1명당 청년 10명 이하로 관리)
 - 참여기업은 일경험 중 참여청년 사고 발생시 운영기관에 즉시 보고 (유선 연락 후 서면 보고)

*** 통합지원센터의 참여청년 만족도 조사시 적극적인 지원 요망**

- 부정 운영 사전 예방 효과, 질 관리 강화 측면에서 프로그램별 참여 청년 일부에 대해 유선/문자 등을 통하여 조사, 분석 활용
- 응답률 및 성실한 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청년 일부를 선정하여 다과/음료등의 기프티콘 지급

- **(참여청년의 신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